

[별표 7]

지정기간 연장 제외사유

호	연장제외 사유	비고
1호	◆ 가 또는 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가. 우수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나. 우수제품 지정기간 만료일의 익일로부터 기산하여 기술의 잔여 유효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 다. 제4조제2항 각호의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이 지정 이후 확인된 경우	
2호	지정신청 시 제출한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3호	규정 제26조 제1항의 연장신청 기한 내에 연장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4호	지정기간 동안 제35조 제1항의 각호에 따른 경고의 2회 이상 누적	
5호	지정기간 연장신청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	근로기준법
6호	지정 직후 2년간 수요기관 만족도 평가결과 ‘미흡’이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7호	지정기간 연장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자	
8호	◆ 가 또는 나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가. 우수제품 지정증서에 명시된 우수제품과 관련하여 지정기간 중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나. 우수제품 관련 성능미달이 확인된 경우	
9호	지정기업이 아닌 다른 기업이 수익 약정 등을 바탕으로 우수제품의 제품관리나 납품관리 등을 주도하여 수행한 경우	
10호	협업체의 추진기업이 해당 세부품명에 대한 제조등록을 보유한 경우	
11호	지정기간 연장신청일 기준으로 신청업체 소속 직원이 공공조달역량개발원 등의 우수제품 심화교육(조달청장이 우수제품 심화교육으로 인정한 다른 기관의 교육과정 포함)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12호	'우수제품 직접생산 제조공정표'를 제출하여 적합으로 판정받지 못한 경우	
13호	연장신청일 기준 직전 2년동안 총매출액 대비 기술개발 투자 비율이 3% 미만	

※ 제1호(가, 나)의 예외 : 관계법령에 따른 적용기술의 유효기간 연장 제한 등으로 우수제품 적용 기술의 유효기간 연장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우수제품의 기간 연장 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인정된 시험기관이 발급한 시험 성적서로 품질·성능 등을 확인할 수 있다면 기간 연장

제2호의 예외 : 해당 우수제품 기간연장 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인정된 시험·검사기관이 발급한 검사합격증명서 또는 시험성적서로 품질·성능 등을 확인할 수 있다면 기간 연장

※ 제11호는 2028년 연장신청 접수건부터 적용

※ 12호는 기본지정기간 내에서 최초 연장신청건으로 `27년 7월1일 이후 연장신청 접수건부터 적용되며 `27년 1회차부터 지정받은 제품은 해당하지 않음

※ 단, 13호는 `AI기술` 분야로 우수조달물품을 지정받은 제품에만 적용된다.